

# 선박직원 면허갱신 실태 특정감사 결과(요약)

【 2024. 2. 26.(월) / 감사담당관 】

## 1 감사 개요

### □ 배경 및 목적

- (배경) 선박직원이 면허갱신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승무경력증명서에 과학원장 전자관인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확인('23.10.19.)
- (목적) 특히, 관인을 관련 행정절차에 따르지 않고 무단 사용하여 서류를 작성한 것은 공문서의 위조에 해당할 수 있음

### □ 감사 목적

- 선박직원의 필수·보유 면허(항해사·기관사)와 면허 갱신 절차, 재직증명서 및 승무경력증명서 발급, 관인 관리 및 사용의 적정성 감사
-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찾고,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 □ 근거

-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기상청훈령 제1023호, 2021. 10. 13.)

### □ 감사 기간 및 대상

- 기간/인원: '23. 11. 20.(월) ~ '24. 1. 19.(금) 2개월/감사담당관 외 2명

### □ 중점사항

- 선박직원의 필수 및 보유 면허의 갱신 절차 적정성
- 선박직원의 재직증명서 및 승무경력증명서 발급 방법의 적정성
- 전자관인 등 관인의 관리 및 사용의 적정성
- 기상관측선의 특수성이 고려된 문제점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강구

## 2

## 감사 결과

### □ 감사처분 총괄표

구분	징계	경고	주의	시정	개선	통보	계	모범사례
건수 (처분요구)	1	6 (개인 4, 부서 2)	-	-	-	2	9	-

### □ 감사처분 목록

번호	제 목	처 분	부 서
1	승무경력증명서 관인 무단 사용	징계요구 (경징계)	○○○
		개인경고	○○○, ○○○ ○○○, ○○○
2	승무경력증명서 발급 부적정	부서경고 통보	○○부
3	관인의 사용과 관리 부적정	부서경고 통보	○○과

## 【 문제점 】

- 「기상청 관인 관리 매뉴얼」에 따라 관인 날인 요청시 관련문서(내부결재 등)를 제출하고 관인사용등록철에 문서번호 등을 기록하면 관인 관리자가 확인
  - 관인은 반드시 절차에 따라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관인 관리자 외 타인의 임의적 날인 등을 금지함
- 그런데 2019년 이후 선박직원 5명이 해기사 면허 갱신을 위해 기상관측선 관측실 업무용 PC에 저장되어 있던 관인 인영 전자파일이 포함된 승무 경력증명서 서식을 이용하여 직접 승무 경력을 작성하고, 검토나 승인 절차 없이 무단으로 국립기상과학원장 명의로 승무경력증명서를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 관인의 무단 사용은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등에 따른 공문서의 위조 및 동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승무 경력의 「선박직원법」에 따른 면허 갱신 요건을 충족하므로 발급된 면허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판단('23.11.20. 지방해양수산청 검토 회신)
  - ※ 관인을 무단 사용한 직원 5명 중 1명(2019. 11. 임용)은 징계 시효(3년)가 지나지 않았고, 4명은 징계 시효가 지남

## 【 처분요구 】

- 면허 갱신을 위해 관인을 무단 사용하여 승무경력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 의무 위반한 관련자에게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징계요구 또는 경고 조치 (징계요구, 경고)

## 【 문제점 】

- 「선박직원법」에 따른 면허 갱신 요건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고 면허 갱신 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등으로 되어 있고, 「선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국가기관 소유 선박에 승무한 경력은 그 소속기관 장이 증명하는 서류 등에 의해 증명
  -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라 승무경력기간은 승선한 날로부터 하선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승선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1월에 미달되는 승무 경력기간은 합산하여 30일을 1월로 하고, 1년에 미달되는 기간은 합산하여 12월을 1년으로 계산
- 2019년 이후 국립기상과학원은 선박직원에게 승무경력증명서를 19건 발급 하였는데, 승무경력에 해당하는 승선기간을 모두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으며, 그중 8건은 사무실 근무 기간을 승선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았고, 7건은 승선 기간 작성을 누락
  - 다만, 선박직원법에 따른 면허갱신 요건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고 면허 갱신 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등으로 되어 있어, 실제 해기사 면허 갱신 요건에 대한 승무경력 자격은 모두 충족
  - 그리고 2022. 8. 9. 이전 발급한 12건은 내부결재를 거치지 않고 발급했고 그 이후 발급한 7건은 모두 내부결재를 했으나 전자문서에 승무경력증명서 내용을 기록 또는 첨부하지 않아 결재자가 검토 후 승인하였는지 알 수 없음

## 【 처분요구 】

- 승선기간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내부결재 등 발급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승무경력증명서가 부적정하게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 경고 조치 (부서경고)
- 승무경력증명서 발급 시 검토 및 승인 절차가 철저히 이루어져 승선기간 등 증명서의 내용이 정확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 (통보)

## 【 문제점 】

- 「기상청 관인 관리 매뉴얼」에 따라 관인 날인 요청시 관련문서(내부결재 등)를 제출하고 관인사용등록철에 문서번호 등을 기록하면 관인 관리자가 확인, 관인 날인을 위한 결재가 부적합한 일부 서류는 고무인 등으로 결재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별도 보관
  - 관인은 반드시 절차에 따라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관인 관리자 외 타인의 임의적 날인 등을 금지함
- 2019년 이후 국립기상과학원 관인사용등록철의 등록 건수는 총 1,678건인데, 그중 문서번호를 정상적으로 기록한 경우가 1,397건(83.3%), 빈칸으로 두거나 문서번호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142건(8.5%)이고, 승무경력 증명서 발급 시 내부결재 없이 관인을 날인한 경우가 5건
  - 각종 신청서, 증명서, 확인서, 위임장, 보고서 등에 대하여 문서번호 없는 고무인으로 기록한 경우가 139건(8.3%)
- 또한, 관인사용등록철에 관련문서가 있음에도 문서번호를 누락한 경우가 28건, 고무인 결재를 하고도 문서번호에 고무인 기록을 누락한 경우가 31건, 고무인 결재 내역이 없는데 고무인으로 기록한 경우가 2건

## 【 처분요구 】

- 관인사용등록철에 관련문서가 있음에도 문서번호를 누락, 고무인 결재를 하고도 문서번호에 고무인 기록을 누락, 고무인 결재 내역이 없는데 고무인으로 기록하는 등 관인 사용과 절차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 경고 조치 (부서경고)
- 관인 날인 시 내부결재 등 관련 문서를 제출받고 관인사용등록철에 문서번호 등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된 것을 확인하여 관인이 날인될 수 있도록 관인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세부 방안을 강구 (통보)